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역 후 일정 기간 국방부 고위직 등 임용제한〉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2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3.
3. 회부연월일 : 2025.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을 통해 위헌적·불법적으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법은 국방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군의 문민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행 국방개혁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현역 군인 또는 현역을 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군의 문민기반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차관보, 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부 및 그 외청, 관련 공공기관의 고위급 직위에 과거 군인이었던 사람을 임명하려는 경우 전역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보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생략) <u><신설></u>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차관보, 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보해질 수 없다.</u> 1. <u>국방부차관·차관보,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3년</u> 2. <u>국방부실장급: 2년</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현행 국방부차관·차관보¹⁾, 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는 국방정책실

1) 2025년 현재 국방부의 차관보급 직위는 존재하지 않음.

장²⁾을 제외하면 모두 정무직공무원 및 민간인이 임명되고 있음.

- 현행법상 문민기반의 확대 기조에 따라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제외하면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³⁾,

특정 직위를 현역을 면한 자만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한정⁴⁾되며, 이마저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군의 문민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따라서 개정안은 군인의 전역 직후 국방부 및 외청, 관련 공공기관의 고위직 보임을 제한하여 국방문민화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국방부 및 외청, 관련 공공기관 고위급 직위의 전역 후 보임

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한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방부 문민화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의 경우 현역을 면한 후 정무직 임명 금지 기간 규정을 두는 점⁵⁾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인사권자의 임명권 및 장관의 제청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공무원법」⁶⁾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단 등의 인사제청권 및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직위에 대한 임명 제한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대한민국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⁷⁾을 제약할 수 있음. 국방부 및 그 외청, 관련 공공기관의 고위급 직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대령 이상의 군인의 취업제한 대상 직종⁸⁾이 아닌데도

5) 미국의 경우도 현역을 면한 후 7년 이내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차관으로의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U.S. Code Title 10 §132a).

6)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7)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8)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도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⁹⁾, 개정안은 해당 직위에 군인의 보임 자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추진에 있어 문민기반의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및 공무원·군인 간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⁰⁾.

문 의 처

02)6788-53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국방부는 적용 대상·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